

# 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1회

제 1 조 :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 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총 계	994,340,074	29,830,202
일 반 회 계	734,935,650	22,048,070
특 별 회 계	259,404,424	7,782,133
공 기 업 특 별 회 계	38,710,813	1,161,324
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38,710,813	1,161,324
기 타 특 별 회 계	220,693,611	6,620,808
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15,311,744	459,352
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 특 별 회 계	19,529,205	585,876
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	4,250,739	127,522
새 마 을 소 득 사 업 운 영 관 리 특 별 회 계	1,239,754	37,193
구 획 정 리 사 업 특 별 회 계	2,992	90
도 시 개 발 사 업 비 특 별 회 계	159,083,513	4,772,505
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2,248,624	67,459
기 반 시 설 특 별 회 계	989,037	29,671
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특 별 회 계	1,136,861	34,106
경 영 사 업 특 별 회 계	353,244	10,597
공 유 수 면 매 립 사 업 특 별 회 계	272,652	8,180
공 업 용 지 조 성 사 업 위 수 탁 특 별 회 계	12,475,957	374,279
주 차 장 특 별 회 계	3,799,289	113,979

제 2 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: 2010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2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9,015,598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한다.

1. 총액인건비
2. 지방채상환 원리금

제 6 조 :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.